

## < 변경 대비표 >

1. 정정대상 투자신탁 : 유리힘찬성장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변경시행일 : 2023.03.16

3. 정정사항

-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업데이트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간이]투자설명서]**

항 목	정정요구·명령 관련 여부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b>요약정보</b>				
	아니오	정기갱신	-	- 최근 결산기 기준 업데이트 (투자비용, 투자실적 추이, 운용전문 인력)
<b>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b>				
5. 운용전문 인력	아니오	기준일 현재 갱신	-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 유리힘찬성장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아니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 채권 : 법 제4조제3항의 ..... 발행하는 사채 및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u>  - 자산유동화증권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u>  <신 설>	- 채권 : 법 제4조제3항의 ..... 발행하는 사채 및 <u>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u> )  - 자산유동화증권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u>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u>  - 주식 추가 주1) <u>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 방법</u> 가. <u>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수수료 수익을 추구</u> 나. <u>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u>

<p>나. 투자제한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 유리힘찬성 장주증권모투 자신탁[주식]</p>		<p>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p>	<p>- 동일종목 투자 : 나. 지방채증권, .....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 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 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 동일종목 투자 : 나. 지방채증권, ..... 한국주택금융 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 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 용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10. 집합투자기 구의 투자위험 가. 일반위험</p> <p>라. 이 집합투 자기구에 적합 한 투자자 유형</p>	<p>아니오</p>	<p>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p> <p>정기갱신</p>	<p>&lt;신 설&gt;</p> <p>- 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연환 산)이 20.66% 이므로 6개의 투자위험 등급 중 위험도가 높은 2등급(높은 위험)으로 분류합니다.</p>	<p>- 증권대차 거래위험 :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 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p> <p>- 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연환 산)이 21.06% 이므로 6개의 투자위험 등급 중 위험도가 높은 2등급(높은 위험)으로 분류합니다.</p>
<p>13. 보수 및 수 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 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p>	<p>아니오</p>	<p>정기갱신 및 주석 추가</p>	<p>-</p>	<p>최근 결산기 기준 업데이트 (기타비용, 증권거래비용, 금융비용 주석 추가)</p>
<p>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p>	<p>아니오</p>	<p>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p>	<p>(4)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① 세액공제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 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 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 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 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 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 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 해당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p>	<p>(4)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① 세액공제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 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 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 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 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p>

		<p>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li> </ul> <p>※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p> <p>※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a href="http://pension.fss.or.kr">http://pension.fss.or.kr</a>)의 “과세제도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5)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령요건 :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li> <li>- 세액공제 : [납입금액]</li> <li>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단, 2022년 12월 31일 까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li> <li>② 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li> <li>③ &lt;생략&gt; [세액공제]</li> <li>-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li> </ul> <p>&lt;신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리과세한도</li> </ul> <p>&lt;신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li> </ul> <p>※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지방소득세 포함</p> <p>※ 퇴직연금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5)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령요건 : 55세 이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li> <li>- 세액공제 : [납입금액]</li> <li>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li> </ul> <p>&lt;삭제&gt;</p> <p>② &lt;현행 3항과 같음&gt;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li> </ul> <p>※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지방소득세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리과세한도</li> <li>-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16.5% 분리과세 선택가능(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지방소득세 포함)</li> </ul>
--	--	--	---

			- 부득이한 연금의 수령 사유 <신 설>	- 부득이한 연금의 수령 사유 : 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 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 구의 운용실적	아니오	정기갱신 및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	최근 결산기 기준 업데이트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주식의 매매회전율 주석 추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 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 규모	아니오	기준일 현재 갱신	-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끝>.